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56,442,387	19,693,272
일반회계	613,479,274	18,404,378
특별회계	42,963,113	1,288,893
기타특별회계	42,963,113	1,288,893
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	7,031,495	210,945
섬진강댐특별회계	8,528,317	255,85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00,753	18,023
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	2,121,366	63,641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3,130,390	693,912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550,792	46,524

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

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

제 4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23,800,000천원」으로 한다

제 5 조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7,274,805천원」과 같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